

#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7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따르도록 함(안 제5조)

##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

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144조제2항

## 예산수반사항 : 943,296천원

## 사전예고 :

- 입법예고 : 2008. 10. 14. ~ 2008. 10. 24.(1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(회계과-12952호)
-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(행정안전부령 제5호)

# **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**

## **일부 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을 “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출기준”을 “집행기준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출”을 “집행”으로 하고 “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」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집행기준)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계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김시호
	담당 직위·성명	경리담당 박광옥 (481-2171)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<u>지출</u> 에 관한 조례	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<u>집행</u> 에 관한 조례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<u>지출기준</u>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대상)</b>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 및 <u>지출</u>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정원가산업무추진비, 시책 추진업무추진비,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말 한다.</p> <p><b>제5조(지출기준)</b>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등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_____</p> <p>.....<u>집행기준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<b>제2조(대상)</b> .....<u>집행</u>---</p> <p>----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5조(집행기준)</b>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1. 경조사 축·조의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무직공무원은 가급적 축·조화 내지 축·조기, 축·조전으로 한다.</p> <p>2.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은 시장과 부시장, 시의회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, 실·국·과장 모두 접대인원 1인당 3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3. 외빈,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하며, 지급할 경우 1인당 80,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4. 중요한 시책행사를 제외한 외부의 각종행사에 축하 또는 위로의 목적으로 화분, 화환의 전달을 금지한다.</p>	

## 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5. 각종 동우회, 시민,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.	<삭 제>
6.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·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.	<삭 제>
7.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·외 출장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.	<삭 제>
8. 공공기관간 화환·화분의 전달 및 전별급품의 전달을 금지한다.	<삭 제>

#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수정안

의안 번호	175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9. 7. 3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1. 수 정 이 유

-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세분화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.(안 제5 조)

# **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**

## **일부 개정조례안에 수정안**

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집행기준)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

1. 경조사 축·조의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무직 공무원은 축·조화, 축·조기 또는 축·조전 등으로 할 수 있다.
2. 각종 동우회, 시민,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3.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·외 출장 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<u>제5조(집행기준)</u>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</p>	<p><u>제5조(집행기준)</u>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2항에 의한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경조사 축·조의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5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무직공무원은 축·조화, 축·조기 또는 축·조전 등으로 할 수 있다.</li><li>2. 각종 동우회, 시민,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.</li><li>3.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·외 출장 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.</li></ol>